

재심소장

재심원고(원고) 임그루

우편번호 767-805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a동 103호

휴대폰 010-2878-2177

재심피고(피고) 케이티 노동조합

우편번호 463-7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자 위원장 정 윤 모 전화 031-727-2820

재심청구의 소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20. 선고 2014재나1072

재심 할 판결의 표시

-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청구 취지

- 원판결을 취소한다.

재심청구원인

1. 재심사유

민소법 제451조①항 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 2014재나1072 때 보정권고 통보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위 사항으로 재심 청구합니다. 계속적으로 행정법원 이송주장 첫 번째로 한 것은 법률지식 부족입니다.

첨부서류

1. 고등법원판결 등본 1부(총3장)

1. 사본 재심소장 1부

1. 납부서 1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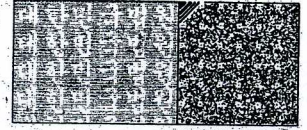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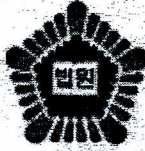
※.참고

2014재나1072때 보정권고 통보서(총2장)

2016년 1월 일

재심원고: 임 그 루

서울고등법원 귀중



서울고등법원

제 26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4재나1072 기타(금전)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임그루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a동 103호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케이티노동조합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KT본사

대표자 위원장 정윤모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7. 13. 선고 2009가합9702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16. 선고 2014재나130 판결

변론종결 2015. 10. 1.

판결선고 2015. 10. 20.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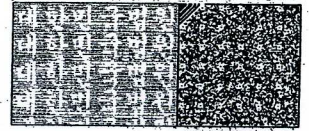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 판결과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재심대상판결로 이 법원 2014. 9. 16. 선고 2014재나130 판결을 삼고 있으나, 원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 2011. 1. 21. 선고 2010나73583호 사건에 대한 재심사유이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 2010나73583호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이 법원 2011재나498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2다15435호 상고하였으나 2012. 4. 26. 상고가 기각된 사실, 원고는 다시 동일한 재심사유로 2012. 5. 17. 이 법원 2012재나495호로 위 2010나73583 판결 및 위 2011재나498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2다10835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2. 15. 상고가 기각된 사실, 원고는 다시 2013. 3. 7. 동일한 재심사유로 이 법원 2013재나20007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권 남용으로 재심청구가 각하되었고, 대법원 2013다80924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된 사실, 원고는 2014. 2. 11. 이 법원 2014재나130호로 재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소권 남용으로 재심청구가 각하되었고, 대법원 2014다67478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고 다시 2014. 12. 30.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이미 4차례에 걸쳐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제기 하였다가 기각되었음에도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석

김현석



판사

백승엽

백승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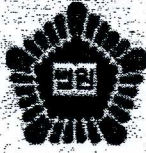


판사

정준화

정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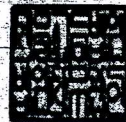


정본입니다.

2015. 1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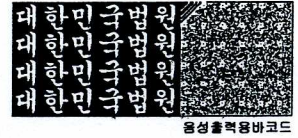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이병정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

보정권고

사 전 2014재나1072 기타(금전)
[임그루 / 케이티노동조합]

원고(재심원고) 임그루

다음 사항을 5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할 사항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를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2015. 1.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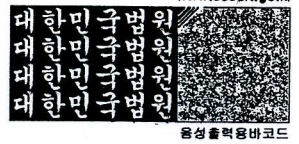
법원사무관 박근영

※ 문의사항 연락처 : 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 법원사무관 박근영

전화 : 02-530-2364 (서관13층 민사2과 내)

팩스 : 02-530-1298

e-mail : slgmh026@scour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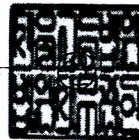


등본입니다.

2015. 2. 2.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박근영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